

논문 심사 규정

2024. 1. 14. 개정

1. [심사 대상] 『구비문학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 주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 진행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3.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1단계: [요건심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학회에서 정한 투고 논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규정 저촉 여부와 논문 유사도 검사,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반려한다.

2단계: [심사위원 추천과 선정] 편집위원들은 요건심사를 통과한 각각의 투고 논문에 관하여 전문적 심사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심사위원의 추천은 관련 전공학자 중 연구업적과 학술역량이 탁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된 심사위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연구자는 해당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3단계: [심사 진행과 결과 판정] 심사위원이 보내온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논문 게재 가능 여부를 평정하고, 투고자에게 심사소견과 함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4단계: [논문 게재 최종 확정]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을 거친 원고와 수정보고서를 받아서 수정사항을 확인한 뒤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수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차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사기준]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라야 한다.
- (2) 문제나 방법, 결과 면에서 아직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 논의를 재정리한 수준의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적절한 근거와 정합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증의 과정 없이 주장만이 제시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4)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재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논지 전개에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필요한 주석 등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평가항목과 점수] 논문 심사 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항목	점수								심사 세부 사항
연구 내용의 독창성 (20)	20	18	16	14	12	10	8	6	연구 내용 및 결과가 독창적인가?
연구 방법의 적합성 (10)	10	9	8	7	6	5	4	3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가?
자료 검증의 충실성 (10)	10	9	8	7	6	5	4	3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검증이 충실한가?
논증의 충실성 (10)	10	9	8	7	6	5	4	3	주장에 대한 논증이 충실한가?
논리적 정합성 (10)	10	9	8	7	6	5	4	3	논문의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선행 연구 활용도 (10)	10	9	8	7	6	5	4	3	선행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했는가?
학문적 기여도 (10)	10	9	8	7	6	5	4	3	관련 분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논문의 체재 (10)	10	9	8	7	6	5	4	3	논문의 체재를 갖추었는가?
논문 초록의 적합성 (10)	10	9	8	7	6	5	4	3	국문·영문 초록의 분량과 내용이 적절한가?
총점	100~91점: 게재가능, 90~76점: 수정후게재, 75~60점: 전면수정후재투고, 60점 미만: 게재불가.								

6.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항목 별로 심사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 후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소견서에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각 심사 결과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게재가능: 제출된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완결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게재 가능.

- (2) 수정후게재 :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나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수정작업을 거쳐 당회 게재 가능.
- (3) 전면수정후재투고 :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작업을 거친 후 차회 투고를 통한 재심사 가능.
- (4) 게재불가 : 학회지에 수록할 만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게재 불가.

7. [심사 결과 판정]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관리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에 대한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비고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투고자 책임하에 최종원고 제출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후재투고	수정후게재	수정사항 검토후 게재 결정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수정완료 후 다음호 투고를 통한 재심사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의로 '수정후게재' 또는 '전면수정후재투고' 결정)	결정에 따라 '수정후게재' 또는 '전면수정후재투고' 절차 이행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투고 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 책임하에 원고를 정리하여 게재한다.

- (2)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기한 내에 심사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최장 3개월까지 수정 논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확정하고,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심사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3) ‘전면수정후재투고’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은 투고자에게 일단 반려한다.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해 차호에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재투고된 논문은 다른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투고자가 재투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밝히거나, 차호에 논문을 재투고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소견을 통보하고 반려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5) 1차 판정 결과 ‘편집위재심’ 대상이 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수정후게재’ 나 ‘전면수정후재투고’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이후의 절차는 ‘수정후게재’ 및 ‘전면수정후재투고’에 준하여 진행한다.
 - (6) 한 논문이 3회에 걸쳐 ‘전면수정후재투고’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8. [이의제기 절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인을 재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소견을 반영하여 판정을 내린다.
 - (4) 투고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사 소견서, 심사답변서, 저작권 위임 동의서 등의 양식은 따로 정한다.
- (2)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심사용 논문에서 투고자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심사 소견서에서 심사자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편집위원, 편집이사, 편집간사는 투고자와 심사자 및 심사과정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편집위원, 편집이사, 편집간사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심사과정에서 제외하여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기한다.
- (3) 투고논문 심사 결과는 해당 학회지 편집에만 반영되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따른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4) 당해 연도 연회비와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게재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5) 기타 따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